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276호
----------	---------

제출년월일 2023. 7. 3.
제출자 권민찬, 황성석 의원

1. 제안이유

- 개정된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일제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조례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국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 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가족차량,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혜택을 확대하여 그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위해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기준 개정(안 제8조제4항제1호)
- 나.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대상 확대 개정(안 제13조의2)
- 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개정(안 제18조제3항제2호)
- 라. 자원봉사기관 및 감면시간을 확대 개정(안 제5조1항 별표1 차목)
- 마. 3자녀 이상, 병역명문가 가족차량,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개정함
(안 제5조1항 별표1 카목, 너목~러목)
- 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신설 및 개정(안 제 15조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주차장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주차장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7. . ~ 2023. 7.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3. 6. . ~ 2023. 7.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교통과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법 제12조 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 제3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운영일수/365**”를 “**운영일수/365 × 운영시간/24**”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7조 제4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여성우선 및 어르신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여성우선 및 어르신우선,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르신우선**”을 “**어르신우선, 국가유공자우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로우대**”를 “**어르신우선, 국가유공자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우선주차장의**”를 “**여성우선**”으로, “**경로우대주차장의**”를 “**어르신우선**”으로, “**하며**”를 “**하며, 국가유공자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흰색으로 하며**”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후단 중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을 “**같은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를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를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별지 제6호서식 가”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별지 제6호서식 나”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필요시 별지 제6호서식 다에 따라”를 “필요시”로, “유도표지”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유도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1호, 2호, 3호, 6호, 9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제4호다목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를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가”로, “차량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별지 제9호서식)를 부착한 차량”을 “차량”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또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로, “2시간은”을 “4시간은”으로, “2시간 초과분”을 “4시간 초과분”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 및 「모자보건법」 제2조”를 “「모자보건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하거나 김포스마트주차포털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두자녀 이상 일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3자녀이상의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한다. 다만 김포시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더.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차량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러.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의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한다. 다만 중소기업대상으로 지정된 다음연도 1년으로 하고 중소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별표 3 제6호 “골프장 : 1홀당 15대”를 “골프장 : 1홀당 10대”로 하고, 제9호를 제1

1호로 이동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u>법 제12조 제1항</u>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p>	<p>제3조 (용어의 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법 제12조제1항</u>----- ----- -----.</p>
<p>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 기준) ①·② (생 략)</p> <p>③<u>법 제9조 제3항</u>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p> <p>1.·2. 삭 제</p> <p>3.·4. (생 략)</p>	<p>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법 제9조제3항</u>----- ----- ----- ----- ----- -----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7조 (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내표지를 <u>따르</u>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p>	<p>제7조 (주차장의 표시) ① ----- ----- ----- ----- <u>따른</u> <u>다</u>.</p>

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
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 4. (생략)

②공영노외주차장의 표시의 규
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
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주차장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 위치등에 관
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른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② (생략)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
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
면적(m²) × 해당 (또는 인근)토
지의 개별공시지가 × 면수 × 2
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
일수/365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④ -----

-----.

1. -----

----- 운
영일수/365 × 운영시간/24

2. ~ 4. (생략)

⑤ ~ ⑦ (생략)

제11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
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
에서 지정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의2(여성우선 및 어르신우
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
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
라 여성우선 및 어르신우선 주
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
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
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
준은 각각 3퍼센트 이상으로 한
다.

② (생략)

③ 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
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④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
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경로
우대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
지는 노랑색으로 하며, 그 규격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여성우선 및 어르신우
선,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 주
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
----- 어르신우선, 국
가유공자우선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어르신우선, 국
가유공자우선 -----

-----.

1. ~ 3. (현행과 같음)

④ 여성우선 -----
----- 어르
신우선 -----
----- 하며, 국가유공

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제18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② (생략)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지 제6호서식 가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 바닥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6호서식 나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시 별지 제6호서식 다에 따라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합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항-----

4.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④ -----

-----.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 필요시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⑥ (생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기본 (30분)	1구 화당 10분 기준	1일 요금	월정기요금			기본 (30분)	1구 화당 10분 기준	1일 요금	월정기요금		
				주·야 간	주간	야간				주·야 간	주간	야간
1급지	600 원	300 원	7,000 원	-	60.0 00원	-	600 원	300 원	7,000 원	80.00 0원	60.0 00원	50.0 00원
2급지	300 원	100 원	3,500 원	-	35.0 00원	-	300 원	100 원	3,500 원	50.00 0원	35.0 00원	25.0 00원
거주 자 전용	-	-	-	30.00 0원	20.0 00원	20.0 00원	-	-	-	30.00 0원	20.0 00원	20.0 00원
버스 전용	1,500 원	500 원	12,000 원	120.0 00원	-	-	1,500 원	500 원	12,000 원	120.0 00원	-	-

1. ~ 3. (생략)

4. 주차요금의 특례

가. ~ 나. (생략)

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증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유도표지---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 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주차요금의 특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

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
사업용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
거나 상이정도가 심하여 본인
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하는 차량과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별지 제9호서식)
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
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
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을 감경한다.

라. ~ 자. (생략)

차.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
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
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
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경기아이플러
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
량 및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임신부 탑
승차량으로서 임신부 증명자

----- 차량에
대하여-----

-----.

라. ~ 자. (현행과 같음)

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또는 김
포시 자원봉사센터-----

-----4시간-----
-----4시간-----
-----.

카. 「모자보건법」-----

-----.

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다.

타. ~ 거.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 7. (생략)

[별표 3]

타. ~ 거. (현행과 같음)

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

조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I-P
lus)카드를 제시하거나 김포스
마트주차포털에 등록된 경우
에 한하여 두자녀이상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
경하고, 3자녀이상의 경우 주
차요금을 전액면제한다. 다만,
김포시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더.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의 주차요금 100분의 50
을 감경한다.

러.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지 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의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한다. 다
만, 중소기업대상으로 지정된
다음연도 1년으로 하고 중소
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5. ~ 7. (현행과 같음)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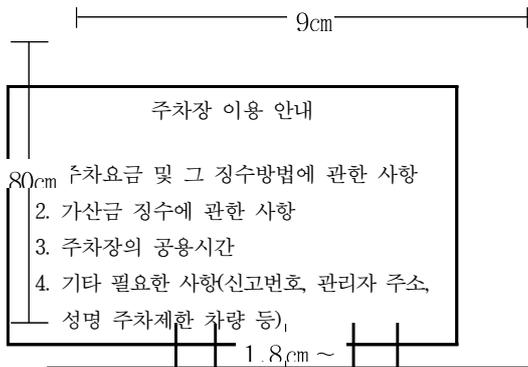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생략)
2.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생략)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생략)
4. 단독주택	(생략)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략)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5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1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생략)
8. 창고시설	(생략)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제곱미터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 등	(현행과 같음)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현행과 같음)
4. 단독주택	(현행과 같음)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현행과 같음)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1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현행과 같음)
8. 창고시설	(현행과 같음)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제곱미터당 1대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제7조 제1항 관련)



비고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 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민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청 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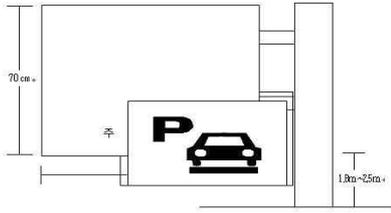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

<삭 제>

<삭 제>

(제7조 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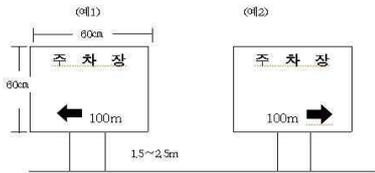
비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 외부표지판 ┌ 바탕 : 청색
 - └ 문자 : 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 : 흰색
 - └ 문자 및 기호 : 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 └ 문 자(가로 17cm×세로 17cm)
- 야간에 주차장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위 치 안 내 표 지

(제7조 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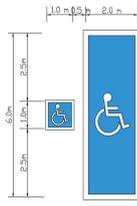


비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6.30.>
-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제18조제3항제 2호 관련)

<삭 제>

<삭 제>



<평행주차>



<직각주차>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제18조제4항제

1호 관련)



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 (제18조제4항제

2호 관련)



※ 비고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적 규격 : 330cm × 500cm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100cm × 100cm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규격: 70cm × 60cm
4. 표지판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기호·문자)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하며 표지는 국제 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 = ISO 7001 또는 국내 ks s iso 7001(Full accessibility or toilets - accessible)을 사용한다.

국제 및 국내 장애인접근성표지



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ISO 7001)



ks s iso 7001(Full accessibility or toilets - accessible)

7.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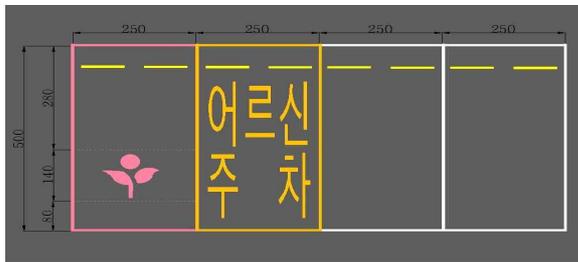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7.6.30.>



[별지 제10호의 서식] (제13조의2 관련) <개정

2019.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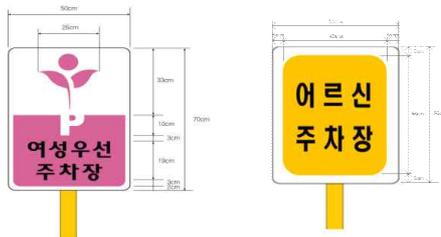


G71011 18P 59107 (한국메인트 합동조합 2018년 G판 참고)

KSM 6080 4종 용착식 플라스틱 도로 노란색(P3-R4/RW)

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장 안내표지

▶ 입간판 시안(1)-지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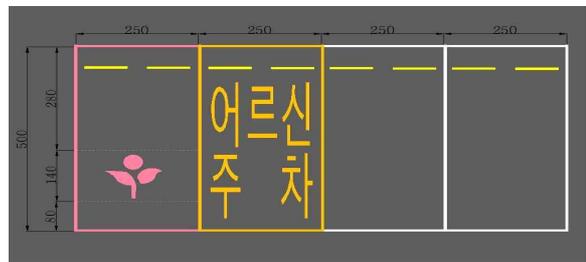


-비 고-

- 규 격 : 50cm × 70cm
- 재 료 : 알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 색 채 : 바탕 (흰색)
문자 (검정색), 기호(분홍색, 녹색)

<삭 제>

[별지 제10호의 서식] (제13조의2 관련)



G71011 18P 59107 (한국메인트 합동조합 2018년 G판 참고)

KSM 6080 4종 용착식 플라스틱 도로 노란색(P3-R4/RW)



여성우선 및 어르신우선, 국가유공자우선 주차구획 안내표지

▶ 안내 표지-지주형



-비 고-

- 규 격 : 45cm × 75cm
- 재 료 : 알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 색 채 : 바탕 (여성·어르신-Pantone 45C, 국가유공자-흰색 또는 파랑)
문자 (여성우선-Pantone 211C, 어르신우선-Pantone 137C)

▶ 입간판 시안(2)- 벽면, 기둥, 이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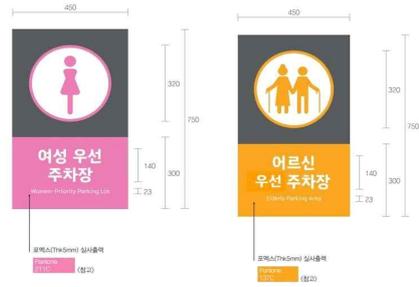
▶ 상부 안내 시안(3)



국가유공자-파랑 또는 흰색)

※ 김포시 공공안내시안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적용

▶ 안내표지 - 부착형



참고 1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는 기준제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

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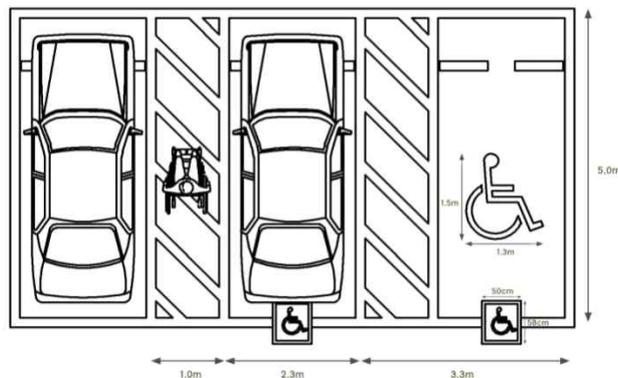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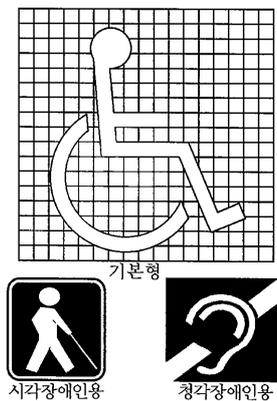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1. 삭제 <1999.6.8>
2. 안내표시기준
 -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시각장애이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이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작도법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중소기업대상)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중소기업에 시상할 수 있다.

제36조(시상방법 및 부상) 수상 기업체에게는 상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또는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예우 대상자) 예우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김포시 주차장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3.,2022.12.2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12.30, 2006.3.13, 2007.11.8, 2017.6.3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0. 1.20.,2022.12.28.)

제4조(삭제 2012.10.31)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기준)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종료시간 2시간 이내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 1.20, 2017.6.30)(단서 신설 2006.3.13,)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2022.12.28.>

③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되지,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22.12.28.>

1. <삭제 2017.6.30>
2. <삭제 2017.6.30>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4. 법 제8조의2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6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 (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 안내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3.13., 2022.9.2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개정 2000. 1.20)

②공영노외주차장의 표시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3. 5)

③공영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5.,2022.12.28.)

④주차장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 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20.,2022.12.28.)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22.12.28.>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교통체계개선(일방통행 등)으로 인한 지역의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다만, 노상 주차장에 한함) (신설 2004.12.30)
4. 주거밀집지역의 거주자(다만, 노상주차장에 한함) (신설 2004.12.30)
5.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김포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신설 2004.12.30)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30)

③ <삭제 2017.6.30>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12.31.>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해당 (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4. 환승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수익률 × 기간(년)

※ 수익률은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 ÷ 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 × 100 × 1/10로 하며, 환승주차장의 평

균요금은 30분당 요금과 1일 주차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9.12.31.>

⑥ 시장은 매년 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 1.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 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⑦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제9조 (주차장의 설치등) 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후 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2022.12.28.)

②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당해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허가·신고등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20)

제 2 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제11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제11조의2 (버스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①시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버스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버스 전용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버스 전용 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7.6.30]

제11조의3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당해 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급지 노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7.6.30']

제11조의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의 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해제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여성우선 및 어르신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 및 어르신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각각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④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 경로우대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노랑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0호의 서식과 같이 한다.

[전문신설 2017.4.18]

제14조 (주차장 설치심의등)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0)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해당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용의 장기예측

제14조의2(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와 위탁관리 협약한 사업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제5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월정기요금 중 주·야간금액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6.30>

③ 관리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제14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12.28.>

②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총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10.31]

제 3 장 부설주차장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28.>

제15조의2 (관리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모든 관리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을 말한다.(개정 2000. 1.20, 2004. 3. 5, 2006.3.13)

제15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소수점 이하의 수는 이를 0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7.6.30]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로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31)

② (삭제 2015.10.30)

제17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한 시설물로부터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6조제1항을 적용하며, 영 제9조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검사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2022.12.28.)

②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한 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산정한 1일 주차요금(2시간까지의 1구획당 30분기준 요금에 12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시장은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제18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지 제6호서식 가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 바닥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6호서식 나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시 별지 제6호서식 다에 따라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합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6.30>

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0.7.28.>

[전문개정 2013.7.22]

제19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자주식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총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 5퍼센트이상
2. 총 주차대수규모가 100대이상인 경우: 10퍼센트이상

②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10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예의 제공)

(삭제 2000. 1.20)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등)

(삭제 2000. 1.20)

제22조 (공영 부설주차장 등의 개방)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 지정, 지원기준 및 내용, 운영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중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12.31.>]

제 4 장 보 칙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중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17.6.30>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6.30>

[본조신설 2012.10.31]

[제22조에서 이동 <2019.12.31.>]

제23조

<삭제 2017.6.30>

[별표 1] <개정 2019.12.31., 2020.10.3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기본 (30분)	1구획당 10분기준	1일 요금	월정기요금			기본 (30분)	1구획당 10분기준	1일요금	월정기요금		
				주·야간	주간	야간				주·야간	주간	야간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	60,000원	-	600원	300원	7,000원	80,000원	60,000원	50,000원
2급지	300원	100원	3,500원	-	35,000원	-	300원	100원	3,500원	50,000원	35,000원	25,000원
거주자 전용	-	-	-	30,000원	20,000원	20,000원	-	-	-	30,000원	20,000원	20,000원
버스전용	1,500원	500원	12,000원	120,000원	-	-	1,500원	500원	12,000원	120,000원	-	-

1.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단, 대곶 및 통진, 북변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2.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주민편의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가. 1급지 :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동지역
 - 나. 2급지 : 1급지를 제외한 김포시 지역
3. 주차시간
 - 가. 기본시간(30분) 경과 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 나.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은 24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주민편의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 공영주차장 운영의 주·야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 : 09:00 ~ 19:00 / 야간 : 19:00 ~ 익일 09:00
 - 라. 최초 10분미만 정차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주차요금의 특례
 - 가. 승용차 요일제 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형 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거나 번호판 등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기자동차 등이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상

이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차량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별지 제9호서식)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라.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자전거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운전하는 공무수행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단, 개인차량의 경우 관련 공문 소지시에 한함)

사. 시, 읍·면·동 주관행사에 동원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 <삭제>

자. <삭제>

차.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 및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임신부 탑승차량으로서 임신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타. 외부 시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해당부서에서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을 제시할 경우 입차 후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파.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당일에 한함)을 제출하는 사람 또는 해당 전통시장의 상인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단, 월정기 주차권의 요금은 전통시장 상인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거. 시장이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대중교통환승의 목적으로 이용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5.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6. 정기권 발행

가. 정기권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30미만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민편익과 주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정기권의 이용기간은 3개월이며, 신청자에 한하여 3개월 단위로 추첨 등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한다.

7.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7.6.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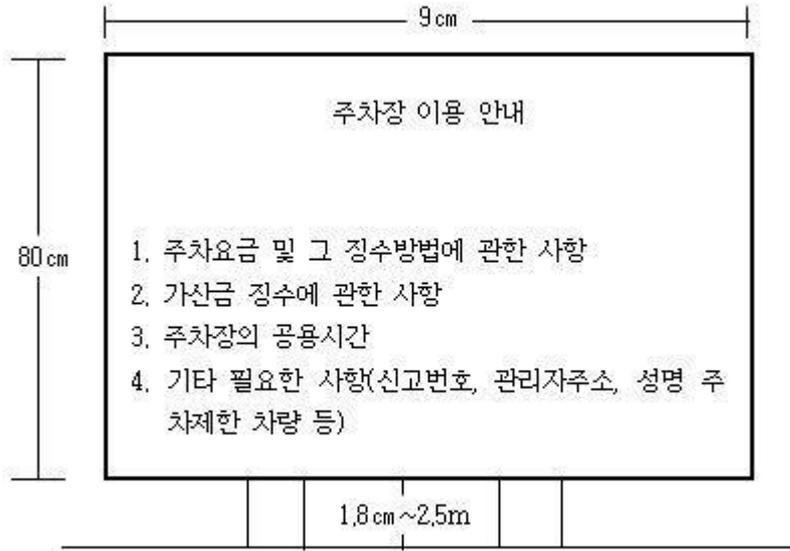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75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34제곱미터 이하 : 1대 - 시설면적 134제곱미터 초과 : 1대에 13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87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제곱미터당 1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당 1대 미만일 경우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당 1대(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에 따른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 1홀당 15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단,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3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비고(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7조 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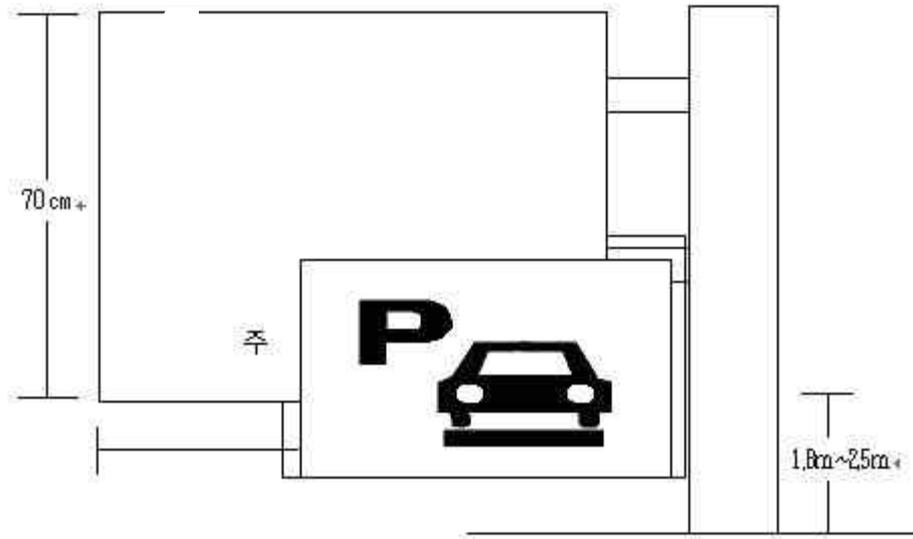
비고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민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청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7조 제2항 관련)



비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 외부표지판 [바탕 : 청색
문자 : 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 : 흰색
문자 및 기호 : 청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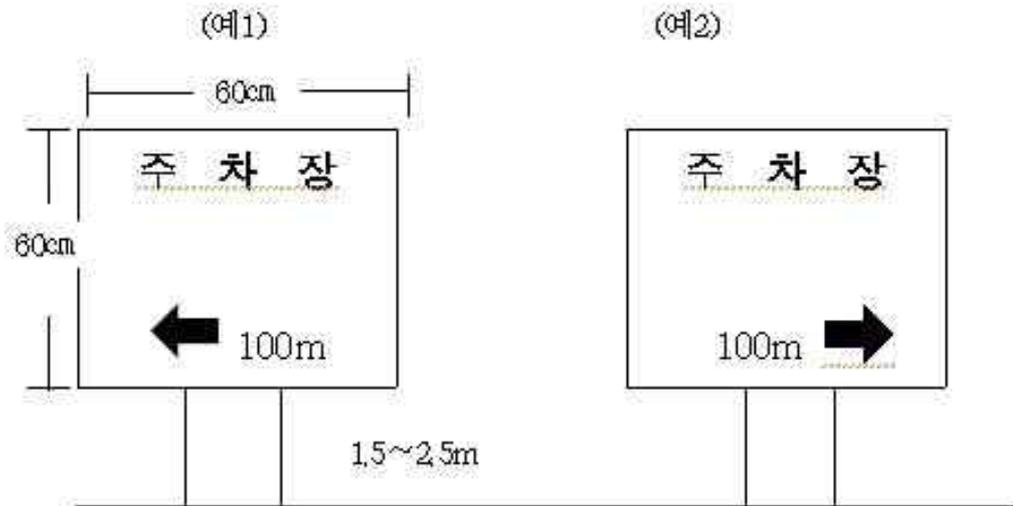
○ 규 격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문 자(가로 17cm×세로 17cm)

○ 야간에 주차장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노 외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제7조 제4항 관련)



비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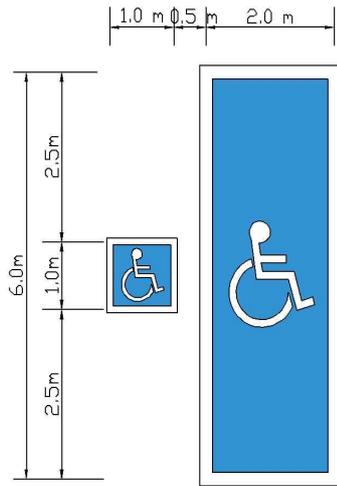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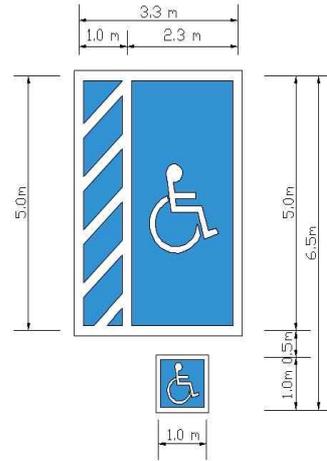
○ 설치위치 : 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제18조제3항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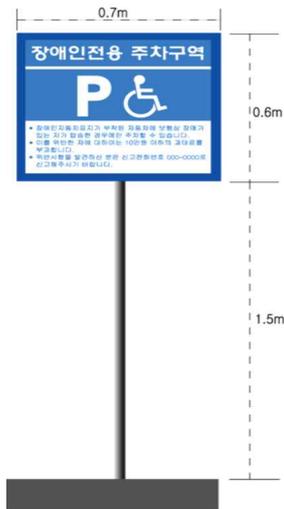


<평행주차>



<직각주차>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제18조제4항제1호 관련)



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 (제18조제4항제2호 관련)



※ 비고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적 규격 : 330cm × 500cm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100cm × 100cm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규격: 70cm × 60cm
4. 표지판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기호·문자)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하며 표지는 국제 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 = ISO 7001 또는 국내 ks s iso 7001(Full accessibility or toilets - accessible)을 사용한다.

국제 및 국내 장애인접근성표지



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ISO 7001)



ks s iso 7001(Full accessibility or toilets - acce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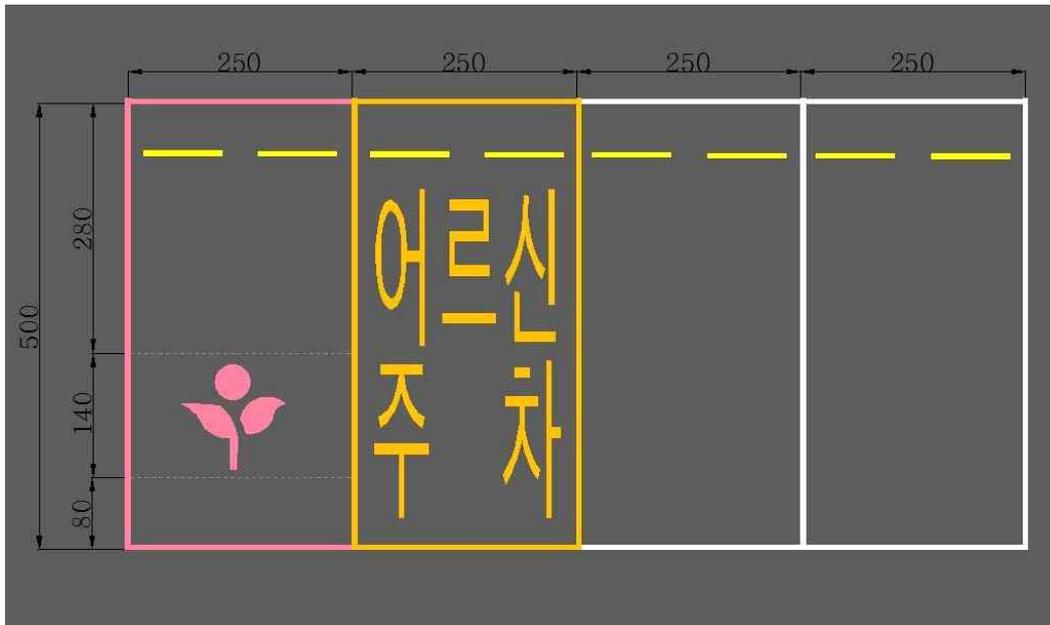
7.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의 서식] (제13조의2 관련) <개정 2019.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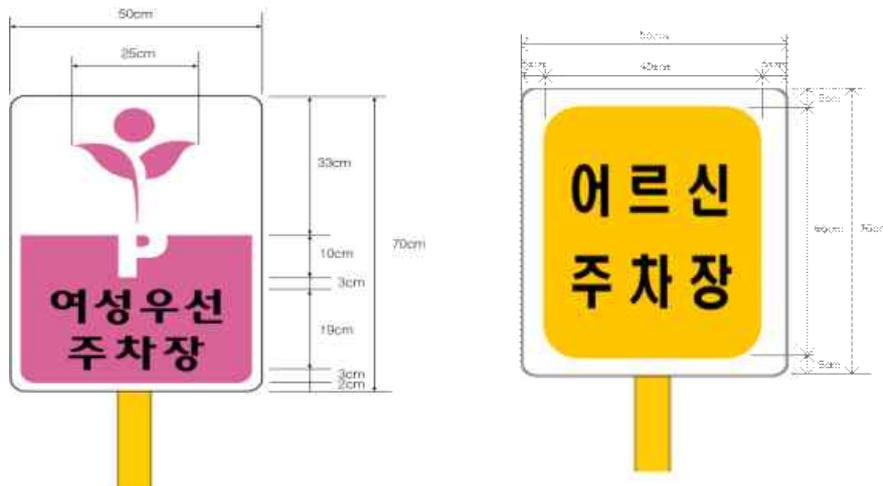


■ G716011 1.8RP 5.9/10.7 (한국페인트 협동조합, 2008년 G판 참고)

■ KS M 6080 4종 용착식 플라스틱 도료 노란색(P3-R4/RW4)

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장 안내표지

▶ 입간판 시안(1)-지주형



-비 고-

- 규 격 : 50cm × 70cm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 색 채 : 바탕 (흰색)
문자 (검정색), 기호(분홍색, 녹색)

▶ 입간판 시안(2)- 벽면, 기둥, 이용형



▶ 상부 안내 시안(3)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276호
----------	--------

제출년월일 2023. 7. 12.
제출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 조례안 별표 1 제4호차목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또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내용을 우수자원봉사 인증 기준이 명확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수정하고자 함.
- 개정 조례안 별표 1 제4호너목에서 ‘다만, 김포시민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단서 내용을 두자녀 가구 수혜 범위를 고려하여 ‘다만, 전액면제는 김포시민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또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수정(안 별표 1 제4호차목)
- ‘김포시민’을 ‘전액면제는 김포시민’으로 수정(안 별표 1 제4호너목)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별표 1 제4호차목 및 같은 호 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제4호차목 중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또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한다.

같은 호 너목 단서 중 “김포시민”을 “전액면제는 김포시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조문대비표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p>차. <u>경기도자원봉사센터 또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u>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p>	<p>차. <u>경기도자원봉사센터</u>----- ----- ----- -----.</p>
<p>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하거나 김포스마트주차포털에 등록된 경우 한하여 두자녀이상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3자녀이상의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한다. 다만, <u>김포시민</u>에 한하여 적용한다.</p>	<p>너.----- ----- ----- -----.</p> <p>다만, <u>전액면제는 김포시민</u>에 한하여 적용한다.</p>